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을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하도록 하고,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시·도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장애아동 복지지원법」이 개정(법률 제17789호, 2020. 12. 29. 공포, 2021. 6. 30. 시행)됨에 따라, 중앙아동지원센터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정하는 한편,

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법률상 사무를 추가로 명시하고,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규정되어 있지 않던 특별자치시를 추가하는 등 현행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의2 및 제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조의2(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) 법 제8조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”이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을 말한다.

제1조의3(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) 법 제9조제4항 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”이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을 말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“시장·군수·구청장”이라 한다)”를 “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시장·군수·구청장”을 “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”으로 한다.

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시장·군수·구청장”을 각각 “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호, 제2호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
2. 법 제12조에 따른 장애의 조기발견에 관한 사무
6. 법 제19조에 따른 의료비지원에 관한 사무
7. 법 제21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지원에 관한 사무
8. 법 제23조에 따른 가족지원에 관한 사무
9. 법 제24조에 따른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무
10. 법 제25조에 따른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지원에 관한 사무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조의2(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)</u> <u>법 제8조제2항에서 “대통령령</u> <u>으로 정하는 기관“이란 「장애</u> <u>인복지법」 제29조의2제1항에</u> <u>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을 말한</u> <u>다.</u>
<u><신 설></u>	<u>제1조의3(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)</u> <u>법 제9조제4항 전단에서 “대통</u> <u>령령으로 정하는 기관“이란</u> <u>「장애인복지법」 제29조의2제</u> <u>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</u> <u>을 말한다.</u>
제4조(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 공) ① <u>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</u> <u>군수·구청장(구청장은 자치구</u> <u>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“시장</u> <u>·군수·구청장”이라 한다)</u>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 은 동의 서면을 「사회복지사업 법」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 보시스템(이하 “정보시스템”이 라 한다)을 통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제4조(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 공) ① <u>특별자치시장·특별자</u> <u>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</u> <u>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</u> <u>하 같다)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.

② ~ ⑤ (생략)

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금융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금융정보등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⑦ (생략)

제7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시장·군수·구청장 (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<신설>

<신설>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⑥ -----

-----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-----.

⑦ (현행과 같음)

제7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-----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-----

-----.

1. 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

2. 법 제12조에 따른 장애의 조기발견에 관한 사무

<u>1. ~ 3. (생략)</u>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	<u>3. ~ 5. (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)</u> <u>6. 법 제19조에 따른 의료비지원에 관한 사무</u> <u>7. 법 제21조에 따른 발달장애 서비스지원에 관한 사무</u> <u>8. 법 제23조에 따른 가족지원에 관한 사무</u> <u>9. 법 제24조에 따른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무</u> <u>10. 법 제25조에 따른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지원에 관한 사무</u>
-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	
연 락 처	(044) 202 - 3350